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8-77호
2018. 10. 12.(금)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8-144호)1

공 고(4)

- 개발부담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762호)2
- 가양비래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764호)3
- 공 시 송 달 공 고(공고 제2018-768호)4
- 석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공고 제2018-769호)6

입법예고(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758호)9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761호)27

공 람									
--------	--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비래동 555-6	비래서로10번길 24	2018. 10. 12	건물신축	비래서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비래동 555-10	비래서로10번길 34	2018. 10. 12	건물신축	비래서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법동 404-2	아리랑로197번길 7-25	2018. 10. 12	건물신축	아리랑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신탄진동 150-3	신탄진남로 5	2018. 10. 12	건물신축	행정구역명(신탄진동)을반영	
석봉동 316-45	석봉로58번안길 75	2018. 10. 12	건물신축	석봉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개발부담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납부의 고지〕 및 같은법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부담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에 따른 공고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8. 10. 12 ~ 2018. 10. 26
4. 공고내용 :

대상자현황		대상토지 및	부과금액	비고
성명	주소	사업명		
안*인	대전시 유성구 진잠옛로 21*	미호동 2*4-3 단독주택 건축	부과금액 : 26,052,420원 국비:12,646,810원+379,400(가산금) 지방비:12,646,810원+379,400(가산금)	압류대상: 대전시 유성구 진잠옛로 21*

※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청 민원지적과 박희자(☎608-5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비래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산26-27번지 일원의 「가양비래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 08. 09.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가양비래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2. 사업의 위치 : 대덕구 비래동 산 26-27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대전광역시장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
4. 공고내용 : 재결서정본 송달, 재결일 : 2018. 08. 09.
5. 공고기간 : 2018. 10. 12. ~ 2018. 10. 26. (15일간)
6.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공원녹지과 (☎042-608-513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
7.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김경락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127	
2	하근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15길 1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구 오정동 68-51 토지 소유주로부터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이 있어 확인한 바, 현존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있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1.공시송달 방법 : 대덕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공 고 기 간 : 2018. 10. 12. ~ 2018. 10. 26.(14일간)
- 3.공 고 장 소 : 대덕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해당 사·군·구 홈페이지
- 4.공시송달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최원규				
	주 소 (대장상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담리 517-8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2018.10.11. 건축물대장 말소				
라.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건축물대장말소)		위치	구분/층별	구조/지붕	용도	면적
		대덕구 오정동 6 8-51	주1/1층	연와세벽/스라브	주택	90.34㎡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5. 유의사항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명 : 석봉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2.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53-1번지일원 (69필지, 13,875㎡)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5. 사업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6. 사업예산 : 16,667천원
7.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가. 관계서류 : 지번별조서 및 사업위치도
 - 나.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지적과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대덕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민원지적과(☎042-608-5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방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지적과
 - 나. 전화 : 042-608-5303
 - 다. 팩스 : 042-608-3825
 - 라. 우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회 목적과 운영원칙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나. 주민자치회 설치와 기능에 대해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 다. 주민자치회 정수와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까지).
- 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에 대해 정함(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
- 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운영세척에 대해 정함(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2018. 10. 12. ~ 2018. 11. 1.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11.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교육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공동체과(전화 : 042-608-6511, FAX : 042-608-3822, E-mail : osyso@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공동체과 담당자 신영실(전화 : 042-608-65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동 소재 각 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천으로 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

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

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차례 연임 이후에는 신규위원과 동일하게 추천방법에 따른다.

제2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시범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관계법령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2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간사 실비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재정적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 468,000천원 소요(2019년 기준)
 - － 인 건 비 : 156,000천원
 - － 사 업 비 : 162,000천원
 - － 물 건 비 : 15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100%)

3. 작성자

- 교육공동체과장 박 승 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계
세 출		-	468,000	318,000	-	-	786,000
인건비		-	156,000	156,000	-	-	312,000
사업비		-	162,000	162,000	-	-	324,000
물건비		-	150,000	-	-	-	150,000
재원 조달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수입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468,000	318,000	-	-	786,000
	보조금	-	468,000	318,000	-	-	786,000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타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공동체과	
담 당 자 연 락 처	신 영 실 042-608-6511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2018.0.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통·반장의 임기 연장을 통해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통장이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통장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변경(안 제5조제2항제3호)

- 통장·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18. 10. 12. ~ 2018. 11. 1.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11.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교육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공동체과

(전화 : 042-608-6513, FAX : 042-608-3822, E-mail : songs041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공동체과 담당자 송수연 (전화 : 042-608-65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2회”를 “1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의 임기와 연임횟수는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통장·반장의 위·해촉) ① (생략)</p> <p>② 통장·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p> <p>1. ~ 2. (생략)</p> <p>3. 통장·반장의 임기는 <u>2년</u>으로 하 되, 통장은 <u>2회</u>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없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5조(통장·반장의 위·해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3년</u>----- -, ----- <u>1회</u> ----- ----- -----.</p>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④ (생략)

-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2018.0.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